

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사무의  
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2년 12 월 / 일

여 수 시 장 2022.12.1



여수시 조례 제1784호

붙임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.

여수시 조례 제1784호

##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1호를 **삭제**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**수탁기관(재계약의 경우는 제외한다)**” 을 “**수탁기관**” 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제5호 중 “**양도 또는 전대**” 를 “**양도**” 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의회의 동의)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수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</p> <p><u>1. 조례에서 민간위탁사무로 정한 경우</u></p> <p>2. · 3. (생 략) ② · ③ (생 략)</p>	<p>제7조(의회의 동의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2. · 3. (현행과 같음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1조(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) ① 시장은 <u>수탁기관(재계약의 경우는 제외한다)</u>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적격자 선정을 위하여 여수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며,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체한 것으로 본다.</p> <p>② ~ ⑨ (생 략)</p>	<p>제11조(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) ① ----- <u>수탁기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 ② ~ ⑨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5조(의무 및 책임) ① 위탁사무에 관한 수탁기관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4. (생 략) 5. 다른 법인·단체 등에게 <u>양도 또는 전대</u>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15조(의무 및 책임) ① ----- 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----- <u>양도</u>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